「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30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11월 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1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우리 군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원 사업 (안 제3조)

-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등

❍ 지원 대상 (안 제4조)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3. 10. 30.

❍ 회부일자 : 2023. 11. 7.

2. 제안이유

❍ 우리 군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원 사업 (안 제3조)

-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등

❍ 지원 대상 (안 제4조)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입법의 취지 및 근거

❍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68.0%(연평균 13.9%) 증가, 1인당 진료비는 44.8%(연평균 9.7%)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표 1] 난임 시술 진료 현황[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평균	'18년 대비 '22년
난임 시술	환자 수 (명)	121,038	122,597	129,230	143,142	140,458	▲ 3.8	▲ 16.0
	진료비 (억원)	1,542	1,738	2,092	2,415	2,591	▲ 13.9	▲ 68.0
	1인당 진료비 (원)	1,273,668	1,417,552	1,618,655	1,686,951	1,844,354	▲ 9.7	▲ 44.8

❍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난임부부도 늘어나 난임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23. 5. 25.), '불임 및 난임시술 진료현황 분석' 참고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사업)**에서는 ⅰ)시술비 지원, ⅱ)격려금 지원, ⅲ)상담 및 교육 지원, ⅳ)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우리 군의 사업 범위를 명시하였고, 지원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

❍ 안 **제6조(중복지원 제한)**는 지원 대상이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인「모자보건법」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의 취지와 부합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종합검토의견

❍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1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군의 사업으로는 난임검사비 지원과 난임시술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표 2] 2023년 평창군 난임 지원 사업계획

사업명	내용	대상	비고
난임 검사비 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검사비 지원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자	(한도) 1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한도) 신선: 110만원/9회 동결: 50만원/7회 인공수정: 30만원/5회

[표 3] 평창군 난임 시술비 지원내역

연도별	인원수	지원건수	시술2)별 건수	
2021년	24	46	(신선)	25
			(동결)	13
			(인공)	8
2022년	24	47	(신선)	27
			(동결)	11
			(인공)	9
2023년	22	54	(신선)	34
			(동결)	14
			(인공)	6

❍ 난임에 대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인공수정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배란기에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배우자의 정액을 자궁 내로 직접 주입	(신선배아)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 (동결배아) 기존 시술시 생성된 배아를 보관해 뒀다가 해동시켜 이식(과배란 유도~배아생성 생략)

붙임 1 상위법 개정에 관한 부처의견[참고]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6호)

❍ 내용: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강화 및 의무화 등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같이 법으로 의무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지원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시술비 지원사업의 관계, 난임시술 효과성 및 의학적 안전성,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부터 재원과 함께 지방이양되어,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건강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며, 시술지원 횟수 폐지 등 정부 지원 확대는 난임시술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정소요, 시술횟수에 따른 성공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난임부부 건강 지원제도 예시: 검사비·교통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한방치료 등 난임시술비 추가지원방안 마련 등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도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지원 등 출산 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189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30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김성기, 박춘희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난임인 부부의 심리적 ·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사업(안 제3조)

라. 지원대상(안 제4조)

마.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안 제5조)

바.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사. 준수사항(안 제7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8조)

자.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2023. 10. 18. ~ 2023. 10. 25. (7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3. 10. 11. ~ 2023. 10. 17. (7일간),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검토안(건강증진과)	사유	의회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 변경	<미수용> 원안유지.
제2조(정의) 3. “난임부부 격려금”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난임부부 격려금” 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로 인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호 문구 변경 (교통비 지원 포함한 포괄적 개념)	<미수용> 원안유지.
제3조(지원대상)①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의 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한다. 1호 ~ 3호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3조(지원대상) ② 제1항의 난임부부가 난임 극복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호~ 3호 4. 삭제	제3조 문항과 4조 문항 위치 변경	<미수용> 원안유지.
		제2항 내용 변경	<미수용> 제4조의제2항에만 해당.
		제2항 제4호 삭제 제6조(중복지원제한) 규정과 유사함	**<수용>**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제4조 제2항4호삭제.

제4조(지원사업) 1. 가. 나. 2. 3.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4.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군수가----------	제4조(지원사업)①----------. 1.난임 치료를 ----------지원사업 가. 나. 2.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항 제3호, 제4호 위치 변경	**<수용>**제3조제3호, 제3조제4호 실과의견 수용하여 위치 변경.
		제1항 5호 내용 변경	<미수용> 원안유지.
		제2항 신설	**<수용>** 제3조제2항 실과의견 수용하여 신설.
제5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제5조 삭제	제4조(지원사업)에 지원내용 포함되어 있어 삭제.	<미수용> 제3조제1항은 사업추진 내용, 제5조는난임부부 격려금 지원과 금액에 관한 세부 내용.

「붙임 1」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며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난임 극복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

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군수는 난임부부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난임부부 격려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3조(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발의

찬성의원 서명(날인)부

○ 발의 : 김광성 의원

구분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1	평창군의회 의원	심현정	심현정
2	평창군의회 의원	김성기	김성기
3	평창군의회 의원	박춘희	박춘희